

제 1 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사례 1 2021경남조정6·7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노동조합)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기고문 게재)

언론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외부 기고문에 대한 언론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외부 필자의 병원 노동조합 비판 기고문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대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법적 소송 및 고발 등 ○○병원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병원 사무국장 A 씨 사망의 한 원인이며, 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데에는 역대 재단 이사장 및 재단 관계자들의 친노조 행보가 크게 작용했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외부 기고문을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노동조합은 ○○병원과의 법적 소송 당시 A 사무국장은 해임 상태여서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고, 노동조합이 A 사무국장 개인을 고발한 적도 없으므로, 노동조합과의 법적 갈등이 A 사무국장의 사망 원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며, 노동조합으로 인해 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내용도 사실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노동조합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기고문이 외부 필자 의견을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해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고문의 내용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있다면, 신청인 노동조합과 기고자 간 합의를 통해 반론보도문 게재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외부 기고문이라는 이유로 언론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핵심적인 부분은 정정보도를, 그 외 쟁점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기고문을 후속보도 형식으로 게재하여 반론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지금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안타까움과 함께 여러 뒷말들이 오가고 있다. 정년을 불과 6개월 앞둔 터에다 지난 5년여 넘게 ○○병원 노조와의 법적 소송 등 온갖 갈등과 대립 속에 오히려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노조의 편을 드는 듯한 행보가 본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던 점은 주변에 잘 알려져 왔고 예견되어 왔던 일이다. **[중략]** 현재 병원의 구성원들은 의료진이 2백여 명, 간부를 포함한 비노조 직원 3백여 명, 그리고 노조원 1천 5백여 명 모두 2천여 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규모이다. 언제부터인지 환자보다 직원이 더 많은 병원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들이다. **[중략]**

이렇게 노조에 약점이 단단히 잡힌 꼴이니 재단 관계자들은 언제나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노조에 계속 끌려 다니는 형국이다. 지금의 재단 이사장도 연임한 노조위원장인 간부가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터에 친노조 행보라는 세간의 평가이다. 역대 병원 원장들 가운데에는 병원 개혁을 하려다 노조와 마찰로 법적 소송까지 가는 수모를 겪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니면 아예 노조에 침묵 내지는 협조자가 되는 경우이다. 여기에 역대 재단 이사장마다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비상식을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노조를 중심으로 한 병원 개혁은 빈번히 물 건너가는 형국은 물론이고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탈락되는 수모까지 당하게 된 셈.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병원 노조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1. 고 A 사무국장이 노조와의 분쟁으로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했으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노조와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2. 환자보다 직원이 더 많다고 보도했으나 ○○병원은 동 지역 내 상급병원에 비해 환자 수 대비 직원 수가 적은 편으로 확인됐습니다.
3. 역대 병원 원장들이 노조와의 법적 소송으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으나 노조와 법적 소송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4. 편의시설 운영 이익이 노조의 활동자금원이 되었다는 보도 관련, 직원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노조와의 법적 소송 실무를 추진한 장본인이 고 A 사무국장이었다고 했으나 고 A 사무국장이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우측 기사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후속보도(기고문) 게재

- 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조정대상보도를 반박하는 취지의 기고문(단, 조정대상보도의 분량 이내로 한다)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피신청인은 송부된 기고문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우측 기사목록에 해당 기고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고문 내용 상단에 '본지는 언론의 책임인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 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문장을 삽입한다.
- 48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기고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신청인 기고문의 링크를 게재한다.



사례 2 2021대전조정8·9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정정보도, 열람차단)

권익위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신청인을 악성민원인으로 표현한 보도와 관련,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기사의 열람을 차단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공익에 해당하는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 요건에만 해당하면 무조건 공익제보자로 선정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행정절차를 비판하는 보도를 게재했다. 언론사는 해당 보도에서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신청인 A 씨를 두고 이웃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악성민원인이라고 표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국가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공익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패행위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고, 신고 내용과 관련한 도청의 감사에서도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특히, 신청인은 본인에 대한 11건의 고소 건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되었음에도 기사로 인해 주민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인으로 매도당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기사의 열람차단과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를 열람차단할 의사는 있으나 사과문 게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부제소 조항을 합의사항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언론사가 부제소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 당사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으나, 심리종결 후 조사관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여 정정보도 및 조정대상기사의 열람차단으로 분쟁이 종결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불성립결정 후 보도문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악성 민원인 공익제보자 둔갑시킨 국민권익위”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한 A 씨와 관련해 도 감사위원회가 보조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해당 신고인은 갖은 민원을 제기하며 이웃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인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도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해당 신고인이 갖은 민원을 제기하며 이웃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보도로 인해 본의 아니게 공익제보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보도방법

※ 조정불성립결정 후 게재된 보도문이므로 별도 보도방법 관련 합의서면 없음



사례 3 2021서울조정503/504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

강남 소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기관이 강남 소재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신청인이 발주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사실상 강제 이전을 염두에 둔 사전조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2025년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앞두고 서울 시내 11개 고등학교군 전 지역의 종합적 중장기 학생(학교) 배치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이지, 강남 소재 자사고의 부동산 개발 지역 이전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이전은 학교법인의 신청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청인 기관이 강제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기관의 정책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반론보도 게재는 가능하나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심리 중 표명하였고, 신청인 기관은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제출서면을 검토한 결과, 정정보도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교육 당국이 서울 '강남 8학군'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시점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3월 이후가 유력하다. 취재 결과 신청인 기관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는 사실상 강제 이전을 염두에 둔 사전 조사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대상 학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략]**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재배치 검토 대상 학교는 강남구·서초구의 △A고(강남구) △B고(서초구) △C여고(서초구) △D고(강남구) △E고(강남구) 등 5개교다. 서울 중부 (종로구·용산구·중구)에 있는 F고(종로구), G여고(중구), H고(종로구) 자사고 3곳과 I외고(중구), J고(종로구) 등 총 10개교가 대상이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강남 5개 자사고 '강제이전' 추진」 보도 등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위와 같은 제목 등의 조정대상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남 5개 자사고 강제이전을 추진'하고 '강남8학군 내 자사고 뉴타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현재 신청인은 2025학년도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생배치(배정) 방안 마련 및 2025학년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른 기존 일반고와 균형 배치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과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3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①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①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이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④, ⑤, ⑥의 각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4 2021서울조정643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신청인이 배우로 활동 중인 딸의 학교폭력 관련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배우로 활동 중인 B 씨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신청인과 학교폭력 피해자 모임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B 씨의 학교폭력을 가족들이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딸 B 씨의 학교폭력 논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통화 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이 이미 학교폭력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심리 과정에서 중재부는 신청인과 학교폭력 피해자 모임 간의 통화 녹음 내용을 모두 청취한 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중재부는 정정보도 게재와 기사의 열람차단을 피신청인 언론사에 권유하였고,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B 부친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B 씨의 부친은 피해자 모임 관계자와 통화 당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딸의 학폭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바가

인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연예>방송 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정정보도문이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를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삭제한다.



사례 5 2021서울조정1558·1559·1560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C 교수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신청인이 트로트 가수 B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C 교수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신청인)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A 씨는 이전에도 트로트 가수 B를 모욕한 혐의로 ‘악플러 예방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나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바 있다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트로트 가수 B에 대한 모욕 혐의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모욕죄가 인정되었다고 보도했고, 자신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한 것은 트로트 가수 B 사건 관련임에도 C 교수 관련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처럼 묘사한 것 역시 잘못된 내용이라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유튜브 등을 통해 C 교수를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C 교수의 일방적인 제보를 기사화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트로트 가수 B 관련 고소 사건에서 신청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모욕죄가 인정되었다고 사실관계를 잘못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겠으나 손해배상까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신청인도 손해배상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민사소송보다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면서 상징적 의미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유하였고, 양 측이 중재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C 교수는 “최근 B 안티카페의 회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로 8명가량이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이에 동조한 유튜버 3명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커 형사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C 교수는 “이들 외에도 앞서 B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됐으나 재발 방지 약속과 ‘악플러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남성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 교수는 “이 남성은 자신의 카페에 ‘나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저의 명예를 또 한 번 실추하는 행위를 했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B 수호천사’ C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 좌시 안 할 것”>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가수 B 씨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되었으나 재발 방지 약속과 ‘악플러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되었고, C 교수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받았다’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린 남성을 C 교수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남성은 가수 B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C 교수 모욕 혐의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글을 게시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연예섹션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연예섹션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6 2021총복조정25/26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청인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지역사회 연쇄감염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무원인 신청인이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광역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인후통 증상이 있었음에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고 병원에서 일반 진료를 받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청인이 감염원으로서 동료 직원의 추가 감염을 유발하는 등 지역사회 연쇄감염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감염원'이라는 용어가 감염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예단하게 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고, 자신이 지역 내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원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연쇄감염에 영향을 끼쳤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지자체의 확진자 현황 공시에 쓰인 용어에 맞추어 감염원을 접촉원으로 정정하고, 신청인이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원이 맞는지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반론보도로 협의해 볼 것을 권고했다.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팀장이 23일 직위 해제됐다. 행정명령은 물론 복무지침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서 ○○군 공무원발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결과다. [중략] A 팀장은 같은 과 B 팀장과 휴가 나온 군인의 감염원으로 지역 연쇄 감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군청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군청 □□과 소속 A 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과 공무원 등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원으로서 지역 연쇄 감염에 영향을 미쳐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군청의 확진자 현황 공시에 따르면 A 팀장은 동료 공무원과 휴가 중인 군인의 ‘감염원’이 아닌 ‘접촉원’으로 명시돼 있음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A 팀장은 “본인과 B 팀장이 지난 ◇월 ◎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바, A 팀장이 B 팀장의 감염원이라는 확정적 근거는 없으며, 또한 휴가 나온 군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도 지난 ◇월 ☆일이고 장례식장에서의 접촉자도 다수인 점에 비추어 A 팀장이 위 군인의 감염원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종합>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제목과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표시하고,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이 <뉴스-사회>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7 2021서울조정1978/1979/1980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고교생들이 계곡 수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하다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방송하고,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계곡에 놀러간 고교생들이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5m 높이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방송 뉴스 및 교양 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이유

사망한 고교생의 부모인 신청인들은 지자체의 상수도 공사로 계곡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해 수심을 가늠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이 수심을 무시한 채 5m 높이의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망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유가족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물놀이 사고가 만연한 여름철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공익성 보도를 한 것이어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중재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뉴스 프로그램 보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해당 뉴스를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교양 프로그램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과 인터넷에서 모두 정정보도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아울러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도 열람차단하는 것에 합의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 □□계곡 고교생 2명 사망사고>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군 □□계곡에서 고교생 2명이 높이 5m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여 익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본 방송에서 인용한 목격자는 실제로 사고 순간을 목격한 것이 아닌 점, 높이 5m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린 다이빙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가 아닌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정정보도문을 ◇◇◇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 프로그램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첫 번째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을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조정대상기사②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도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례 8 2021총복조정30/31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인 기관이 불법영업 신고에도 봐주기식 단속을 하는 등 유흥업소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기관 소속 지구대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코로나19 불법영업을 방관하여 무능 또는 유흥업소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불법영업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당 지구대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단 한 건의 적발실적도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기관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업소 출입문이 잠겨 있어 출입문 강제 개방을 위해 방역지침 주무부서인 구청 단속반을 기다려야 했고, 이런 이유로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웠음에도 유흥업소와 유착 관계로 봐주기식 단속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지 못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해당 지구대 관할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단속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보도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내용 중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단지 의혹을 제기한 것이므로 유착 의혹에 대한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 기관의 직무 특성상 의혹 제기 보도를 할 경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정정보도 및 일부 반론보도를 권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경찰이 유흥업소 불법영업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한 업주와 손님은 매번 겪은 일인 양 여유 있는 태도로 경찰을 비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중략]** 경찰의 무능 또는 유착관계가 의심되며 코로나19 불법영업을 방치하는 순간이다. A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18분부터 22분 사이 해당 유흥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3차례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흥업소 직원과 실랑이 끝에 내부로 진입했으나 영업흔적을 지우고도 남을 시간이 흐른 뒤였다. 112 신고접수 시간과 B 씨 등이 비밀통로로 올라온 시간의 시차는 50여분 남짓이다. 이 시간동안 유흥업소 직원들이 영업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비밀통로를 이용해 숙박업소에 올라온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중략]**

○○경찰청은 지난 X월 X일부터 Y월 현재까지 오후 10시 이후 불법영업(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대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 기간 ○○경찰은 7개 업소 (◎◎4·◇◇1·▷▷1·△△1)를 적발했다. 하지만 ○○ 대표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 □□동에서의 적발사례는 0건이다.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경찰-유흥업소 유착 의혹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방역지침 위반 영업에 관한 신고를 받고도 A경찰서가 관내 유흥업소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식 단속을 한 데에 해당 업소와의 유착 의혹이 있으며, ○○경찰청 특별단속기간 내 해당 지역 단속실적도 '0'건에 그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단속건수와 관련, 0건으로 보도된 것은 ○○경찰청의 통계누락에 따른 것으로 사실 확인 결과, X월 X일부터 Y월 Y일 현재까지 특별단속기간 동안 관할 경찰은 ◎◎시 □□동에서 총 6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한 바 있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에 관하여, 경찰이 불법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A경찰서는 “지면에 보도된 유흥업소 대상 당시 112 신고에 대한 처리과정을 확인한 결과, 경찰과 업소관계자가 평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112 신고 사실을 업소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업소관계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어떤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종합>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제목과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표시하고, 각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사회>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 각 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9 2021전북조정131·132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둔기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고 보도한 사안과 관련, 언론사가 기사의 열람을 차단한 후에도 조정을 통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업유치 반대집회 참가자 10여 명이 출근 중이던 군수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려 접근하는 과정에서 한 집회 참가자가 공무원 A 씨를 둔기로 폭행하여 A 씨가 뇌진탕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경찰은 폭행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군수 비서실 직원인 A 씨가 휴대폰을 사용해 집회 사진을 촬영하자 집회에 참석한 B 씨가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스티로폼 피켓으로 가리는 과정에서 A 씨와 부딪힌 것을 마치 무거운 둔기를 사용하여 가격한 것처럼 표현하고, 집회 시 경찰이 함께 있어 현장 상황을 경찰이 알고 있음에도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다고 한 것은 악의적 보도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조정 신청 후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열람을 차단했으나, 신청인들이 정정보도 게재를 원하여 심리가 진행됐다. 신청인들은 정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중재부는 폭행 혐의는 수사 중인 관계로 정정에 한계가 있다며 양 측이 양보를 통해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협의할 시간을 원하는 신청인 측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출근길 공무원, 집회 참가자들에 둔기 폭행”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군 기업유치 반대집회 참가자 10여 명이 군수의 통행을 가로막자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공무원 A 씨에게 참가자들이 둔기를 휘둘러, A 씨가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시민 인터뷰를 인용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폭력단체를 색출해 더 이상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나 단체가 없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군 기업유치 반대집회 참가자 10여 명이 공무원 A 씨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채증을 위해 다가오자 집회 참가자 한 명이 폼보드로 가로막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폭행 여부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위 집회를 연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는 ○○군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입주 계약한 한 업체의 닭 도축 공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호남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한다 (게재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사례 10 2021충북조정44·45·46/47·48·4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공무원인 신청인이 지역 이권에 개입하여 폭력조직과 연관 있는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보도와 관련, 신청인이 언론사 기자를 형사 고소한 상황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 A 국장이 폭력조직과 유착하여 일감 수주를 도왔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역 건설업자들과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골프 회동 후 회식까지 즐기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군 공무원 일부가 전통적으로 지역 폭력조직과 유착관계를 가져왔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본인이 관여할 수 없는 민간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조직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정기 모임에 건설업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폭력조직과 관련된 특정업자와 유착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바는 없다고 했다. 또한, 골프를 즐기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언론사의 왜곡보도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게재한 피신청인 언론사의 소속 기자를 고소한 상태였고, 심리 과정에서 조정 합의를 전제로 형사고소를 취소할 의사는 없다고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형사고소건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최근 여러 부적절한 행정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군에서 “A 국장이 조폭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폭로가 나와 지역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일 폭로내용에 따르면 A 국장이 ○○지역 폭력조직 두목 B 씨와 유착해 지역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군민 사이에선 이미 ○○군 기술직 일부 공무원들이 전통적으로 지역 조폭들과 유착관계를 가져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던 중 한 제보자의 A 국장에 대한 폭로가 ‘조폭 유착설’에 힘을 실는 분위기다.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이 ○○군의 특혜성 행정으로 S과 두목 B 씨에게 일감을 뺏겼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A 국장이 조폭 두목 B 씨를 ○○군 내 공동주택 신축중인 한 업체에 추천해 일감을 수주하게 도왔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후 A 국장은 지역 건설업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다. 이들과의 정기모임에서 청탁과 이권개입이 논의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 것 아니냐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중략]**

A 국장은 또, 지난 20XX년 지역 산불 발생 당시에도 건설업자들과 □□시에서 골프 회동을 한 후 회식까지 즐긴 모습이 군민에게 포착돼 자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국장이 ‘조폭’에 일감 몰아줬다” 기사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군청 소속 국장이 조직폭력배와 유착해 관내 사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지역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 내용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국장이 ○○지역 폭력조직 두목 B 씨와 유착해 지역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군 기술직 공무원이 조폭과 관계를 가져왔다”, “직무 관련 사업자들과 정기적으로 회동한다” 등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군 ◇◇◇◇국장은 “열심을 다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에 살인행위와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앞으로는 이런 허무맹랑한 보도는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지역>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충남>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제목을 선택하면 보도문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 각 호의 사항을 전송한다.